

##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

### 1. 선발 예정 인원

시 험 명	직류	선발예정인원	합 계
제30회 입법고시	일반행정	8명	22명
	법제	3명	
	재경	10명	
	사서	1명	
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.

(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.)

### 2. 시험과목

직류	제1차시험(선택형)	제2차시험(논문형)
일반 행정	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	필수(4) :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헌법, 입법과정론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 포함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
법제	상황판단영역 영어 (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헌법, 민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
재경	한국사 (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회계학(정부회계 포함)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
사서	한국사 (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도서관경영론, 자료조직론, 정보검색론, 참고봉사론 선택(1) : 사회과학서지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

※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.

※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(입법과정론 포함)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.

### 3. 시험방법

-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(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/ 과목당 90분)
-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
-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
### 4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「국회 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제50조의 응시자격 정지사유(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「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」 참조)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'54. 7. 1. ~ '94. 12. 31.)

다. 학력·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라.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: 사서직의 경우 1·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.

### 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응시원서 접수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
제30회 입법고시	2014. 1. 6.(월) ~ 2014. 1. 10.(금)	제1차 시험	2. 7.(금)	2. 15.(토)	3. 7. (금)
	※ 취소마감일 1. 17.(금) 17:00	제2차 시험	3. 7.(금)	4. 1.(화) ~ 4. 4.(금)	5. 14. (수)
		제3차 시험	5. 14.(수)	5. 20.(화) ~ 5. 21.(수)	5. 23. (금)

※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.

### 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접속하

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○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(2014. 1. 6. ~ 1. 10.)

- 1. 6.(월) : 09:30 ~ 24:00

- 1. 7.(화) ~ 1. 9.(목) : 00:00 ~ 24:00

- 1. 10.(금) : 00:00 ~ 17:00 (원서접수 마감일)

※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: 신용카드 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(본인계좌만 가능)

○ 기 타 :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)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. 단,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○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○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1. 6.(월) ~ 1. 17.(금) [단,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(1. 17.)에 한해 17:00까지]이며,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(저소득층 해당자 제외)이 불가합니다.

○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 및 재경직류만 해당).

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원서 기재사항(선택과목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, 지방인재 여부 등)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

기간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※ 응시직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.

○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4. 1. 21.(화) ~ 5. 21.(수)까지입니다.

## 7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### 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시험명	TOEFL	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CBT	IBT				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	530	197	71	700	625	65(Level 2)	625
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준점수	352	131	35	350	375	43(Level 2)	375
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
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

### 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(수험번호)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-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(ex. 2012년 1월에서 2012년 4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 등)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**8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**

가. 기준점수(등급)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